

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재공람 · 공고

파주시 공고 제2020-350호로 공람·공고한 『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』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에 앞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·공고합니다.

2022. 5. 31.

파 주 시 장

1. 공람·공고 개요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조서 및 사유서

1)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 내용

구분	기정	변경	개소	면적				
당 초	합 계		802개소	3,390,823㎡				
	자연녹지지역	계획관리지역	1개소	22,047㎡				
	보전관리지역							
	생산관리지역							
	자연녹지지역	농림지역	2개소	1,859㎡				
	자연녹지지역							
	보전관리지역	농림지역	1개소	1,601㎡				
	보전관리지역							
	생산관리지역							
	농림지역	생산관리지역	계획관리지역	17개소	169,347㎡			
						보전관리지역	53개소	245,877㎡
		농림지역	보전관리지역	501개소	2,078,282㎡			
생산관리지역						45개소	253,955㎡	
								계획관리지역
합 계		691개소	2,480,749㎡					
심의결과 반영	자연녹지지역	계획관리지역	1개소	22,288㎡				
	보전관리지역							
	생산관리지역							
	자연녹지지역	농림지역	2개소	1,618㎡				
	자연녹지지역							
	보전관리지역	농림지역	1개소	1,601㎡				
	보전관리지역							
	생산관리지역							
	농림지역	생산관리지역	계획관리지역	12개소	111,686㎡			
						보전관리지역	8개소	7,658㎡
		농림지역	보전관리지역	513개소	2,128,792㎡			
						생산관리지역	40개소	115,381㎡
계획관리지역								

※ 심의결과 반영 691개소, 존치 104개소

재협의 7개소 제외 (산림청고시 제2021-11호에 따른 재협의로 향후 별도 고시 예정)

파주시 공고 제2022-1281호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총 계	680,202,598	감) 332	680,202,266	100.0	지적재조사 등에 의한 면적 반영 (감 332㎡)
도시지역 합계	81,322,573	감) 21,169	81,301,404	11.9	
주 거 지 역	21,893,308	-	21,893,308	3.2	
상 업 지 역	2,220,010	-	2,220,010	0.3	
공 업 지 역	8,213,391	-	8,213,391	1.2	
녹 지 지 역	48,553,932	감) 21,169	48,532,763	7.1	
보전녹지지역	1,591,081	-	1,591,081	0.2	
생산녹지지역	5,369,856	-	5,369,856	0.8	
자연녹지지역	41,592,995	감) 21,169	41,571,826	6.1	
도시지역 미지정	441,932	-	441,932	0.1	
도시지역 외 지역 합계	598,880,025	증) 20,837	598,900,862	88.1	
관 리 지 역	299,541,420	증) 2,325,829	301,867,249	44.5	지적재조사 등에 의한 면적 반영 (감 332㎡)
보전관리지역	147,388,750	증) 2,006,219	149,394,969	22.0	지적재조사 등에 의한 면적 반영 (감 203㎡)
생산관리지역	38,276,688	증) 195,240	38,471,928	5.7	지적재조사 등에 의한 면적 반영 (증 121㎡)
계획관리지역	113,875,982	증) 124,370	114,000,352	16.8	지적재조사 등에 의한 면적 반영 (감 203㎡)
농 립 지 역	230,080,703	감) 2,304,992	227,775,711	33.4	
자연환경보전지역	69,257,902	-	69,257,902	10.2	

※ 기정 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20-116호에 의함

※ 변경 면적은 지적재조사 등에 의한 면적변경(332㎡ 감소) 사항 포함

3)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기정	변경			
파주시 일원	자연녹지지역	계획관리지역	22,288	100	•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
	보전관리지역				
	생산관리지역				
파주시 일원	자연녹지지역	농림지역	1,618	50	•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
파주시 일원	자연녹지지역	농림지역	1,601	50	•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
	보전관리지역				
파주시 일원	보전관리지역	생산관리지역	111,686	80	• 토지이용 현황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
파주시 일원	보전관리지역	계획관리지역	7,658	100	• 기 결정시 누락지역 또는 용도지역 현실화

파주시 공고 제2022-1281호

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기정	변경			
파주시 일원	생산관리지역	계획관리지역	30,694	100	• 기 결정시 누락지역 또는 용도지역 현실화
파주시 일원	농림지역	보전관리지역	2,128,792	80	•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
파주시 일원	농림지역	생산관리지역	115,381	80	•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
파주시 일원	농림지역	계획관리지역	61,031	100	•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

※ 세부조서 : 게재 생략

2. 관련도서 및 조서 : ‘게재 생략’(공람장소 비치)

3. 공람기간 및 의견 제출기간 : 공고일(신문게재일)로부터 14일간

※ 공람기간 (2022.5.31.~2022.6.14.)

4. 공 램 장 소 : 경기도 파주시청 도시개발과(☎ 031-940-4702~4)

5. 의 견 제 출

6.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,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공람기간 내에 서면(별도양식 없음) 또는 팩스(031-940-4709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